# 원각도서관규정

제 정 : 2014. 1. 2 개 정 : 2006. 7. 1 개 정 : 2007. 10. 1 개 정 : 2008. 8. 1 개 정 : 2012. 9. 1 개 정 : 2016. 5. 3 개 정 : 2020. 6. 25 개 정 : 2024. 1. 12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과 학칙(제4조)에 규정된 금강대학교 원각도서 관(이하 "도서관"이라 한다)의 발전계획수립과 진행, 직원의배치, 도서관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운영, 학술정보자료의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도서관은 학술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국내외 각종 서적 및 기타 자료를 수집, 정리, 보존, 이용케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. 또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지역 사회에 개방하고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.

제3조(구성) 도서관에는 도서관장 및 소속 직원을 두며, 도서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조직)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#### 제2장 운영위원회

제5조(목적) 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구성 및 임기) ①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서 관장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- ②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직원이 된다.
-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

제7조(임무) 위원회는 도서관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도서관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2. 도서관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- 3.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4. 기타 도서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회의)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년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 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제3장 자료의 수집

제9조(자료의 예산 및 구분) ①도서관장은 도서관에 교수연구와 학생 학습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다.

②도서관 자료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.

1. 도서자료	가. 귀중 자료, 나. 참고 자료, 다. 일반 자료, 라. 고도서, 마. 정기간 행물, 바. 각종 학위논문 및 기타 도서자료
	행물, 바. 각종 학위논문 및 기타 도서자료
2. 비도서 자료	가. CD, 나. DVD, 다. Audio Tape, 라. Video Tape, 마. 기타 비도
	서 자료

제10조(수집자료의 구분) ①도서관이 수집하는 자료의 종류는 구입자료, 수증자료, 편입자료, 교환자료로 구분한다.

②수증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장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1조(자료구입) 자료의 선정 및 구입은 도서선정 기본 방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입한다.

- 1. 교직원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
- 2.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
- 3. 기타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

제12조(수증자료) ①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장서에 준하여 관리한다. 다만 장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도서관장은 수증된 자료가 5,000권 이상일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자 명의로 개인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3조(교내간행자료의 납본) 본 대학에서 발간되는 대학논문집, 각 연구소 논문집, 교지, 기타 본 대학에서 발간되는 일체의 간행물 등은 10부 이상 도서관에 반드시 납본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자료의 교환 및 배포) ①학술연구활동을 위하여 자료 및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 교환방법의 일환으로 국내외 기관과 교환할 수 있다.

②도서관에서 소장하기에 적당치 아니한 자료, 복권이 많은 도서 및 우리대학교에서 간행되는 모든 간행물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 관계 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열람 및 대출

제15조(열람자격) 도서관 열람자격은 교직원 및 재학생, 학교법인 임직원, 외래강사와 지역주민, 도서관장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<개정 2024.01.12>

제16조(열람시간) ①도서관의 열람시간은 아래와 같다.

자료열람실	평 일: 09:00 ~ 18:00
일반열람실	24시간 개방

②도서관장은 필요에 따라 열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제17조(휴관일) ①도서관의 휴관일은 일반열람실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
- 2. 개교기념일
- 3. 장서점검 기간
- ②도서관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시 휴·개관할 수 있다.

제18조(대출자격) 자료대출자의 자격은 제15조에 준한다.

제19조(대출열람중 발급) ①본교 재학생이 자료를 열람대출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증으로 대용할 수 있다.

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승인을 얻은자에게 특별대출열람증을 발급할 수 있다. **제20조(대출절차)** 본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자는 본교에서 발급한 학생증 (본교 발행 신분증, 특별대출열람증)을 제시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**제21조(대출 책수 및 기간)** ①도서자료의 대출 기간 및 책 수는 아래와 같다.<개정 2024.01.12>

교		수: 20책	60일	직	원	및 조	교:	10천	택 30일
학	부	생 : 10책	10일	외	래	강	사:	5책	30일
대	학 원	생 : 20책	30일	지	역	주	민 :	2책	14일
기	기타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: 3책 10일								

- ②비도서 자료의 대출은 상기 ①항의 대출 책 수에 포함되며 3점. 1일에 한한다.
- ③교직원에 한하여 연구 및 교과지도용 또는 기타 사유로 장기대출이 필요한 경우 5책한도 내에서 대출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.
- ④대출된 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기한 이전에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반납기간이 휴일 일 때에는 그 익일을 반납일로 한다.
- ⑤자료의 대출기간은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제22조(대출 및 반납시간) 대출 및 반납 시간은 제16조에 준한다.

제23조(대출자료의 반납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출 기한 전이라도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

- 1. 교직원의 퇴직, 휴직 및 3개월 이상의 해외여행
- 2. 재학생의 퇴학, 제적 및 휴학
- 3.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 1개월 전
- 4. 도서관의 반납 요구가 있을 때

제24조(통보의 의무) 제23조 제1호, 제2호,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부서장

은 사유 발생 즉시 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25조(관외 대출 금지 자료)** 귀중자료, 참고도서, 정기간행물, 논문자료, 기타 도서관이 정한 자료는 관외로 대출할 수 없다.

제26조(반납독촉) 대출자료를 반납 기한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반납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하며 반납독촉 후 7일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자료대출을 중지하다.

제26조의2(예치금) ①지역주민 중 특별대출열람증을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도서 대출을 원하는 자는 도서관에서 정한 예치금을 납부 한 후 도서 대출을 할 수 있다.

- ②예치금의 보관 기간은 특별대출열람증의 사용 기간이 끝나는 1년으로 정하고 갱신 요청이 없을 시 반환처리 한다.
- ③예치금은 100.000원으로 정한다.〈신설 2024.01.12〉

### 제5장 지정도서 제도

제27조(지정도서제도) 도서관은 각 교과목의 학습을 위하여 지정도서제도를 실시한다. 제28조(지정도서의뢰) 각 학부 교수는 일정한 도서를 지정도서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1주일 전에는 지정도서목록을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9조(지정도서 비치장소) 지정도서는 참고자료실내 지정도서 서가에 비치한다. 제30조(지정도서 열람) 지정도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.

#### 제6장 비치자료

제31조(비치자료) 도서관은 동일한 도서를 2부 이상 소장하였을 때에는 타 전문분야와 중복되지 않을 경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내 각 학부 및 부속·부설 기관에 비치하게 할 수 있다.

제32조(비치절차 및 보관책임) ①해당 부서장이 도서관 자료를 비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비치원을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일단 비치된 자료에 대하여는 보관의 책임을 진다.

- ② 해당 부서장의 교체시에는 후임자가 책임을 진다.
- ③ 비치자료를 훼손·오염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명기하여 도서관장에게 보고하여야

하다.

④ 도서관장은 필요한 경우 비치자료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거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33조(비치자료의 제한) 귀중도서, 비도서자료, 학생의 이용빈도가 많은 자료(참고도서 등)는 비치를 제한한다.

제34조(비치자료의 회수) 도서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치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1. 비치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출 신청이 빈번할 때

- 2. 비치자료가 타인에게 대여되었을 때
- 3.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### 제7장 변상 및 제재

제35조(대출의 제한) 자료를 대출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자료의 반납이나 원상회복 등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.

- 1. 대출된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로서 2회 이상 반납독촉에 불응하였을 때
- 2. 소장자료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- 3. 소장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

제36조(연체자료에 대한 제재) 대출자료는 반납기일이 지나도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체된 일수 만큼 대출을 중지한다.

**제37조(분실 및 훼손의 변상)** ①대출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도서로 실물 변상을 하여야 한다.

- ②동일한 도서로 실물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변상한다.
  - 1. 현 싯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- 2. 귀중도서, 가격 미상인 도서는 해당 기관 및 전문인의 감정을 받아 현 싯가로 환산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
제38조(변상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) ①교직원이 제37조에 의한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서 해당 변상액을 공제할 수 있다.

- ②재학생이 제37조에 규정된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생에 대한 자료대출 중지 및 제 증명서의 발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지역주민이 제37조에 규정된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자료대출 중지 및 예치금에서 해당 변상액을 공제하고 부족분은 추가 징수한다.<개정 2024.01.12>
- ④도서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4.01.12>

#### 제8장 자료의 복사

제39조(자료의 복사) 도서관에 소장한 자료는 복사할 수 있다. 다만, 특정자료의 복사 또는 영인은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# 제9장 장서점검 자료의 제적 폐기

제40조(장서점검) 도서관 자료는 필요에 따라 점검을 하여야 한다.

제41조(제적 및 폐기의 기준) 도서관장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소장 자료를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.

1. 이용가치의 상실

- 2. 자료의 훼손 및 오손
- 3. 이용자의 분실로 인한 것 중 현금으로 변상된 자료
- 4. 대출된 자료로서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
- 5. 천재지변,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

제42조(제적 및 폐기처리) 제적 및 폐기할 자료는 목록을 작성하여 사유를 기재 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

### 제10장 도서관 진흥

제43조(도서관 발전계획 수립) 매 5년마다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대학도서관진흥종합 계획에 의거, 다음의 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한다.

- 1. 5년마다 수립하는 발전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.
  - ⑦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
  - (J)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
  - 때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
  - @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방안
  - @ 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방안
  - ◉ 그 밖에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2. 연도별 발전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.
  - ⑦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
  - 대 해당 연도 도서관 발전사업 추진방향
  - @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분 운영계획
  - 라 그 밖에 발전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

제44조(사서 직원) 사서 및 전문 직원 배치와 교육·훈련 시간은 다음에 따른다.

- 1. 사서 및 전문직원은 「대학도서관진흥법」제11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, 시행령에서 정한 배치기준[별표 1]에 따른다.
- 2. 도서관장은 대학의 연구·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확보·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3. 「대학도서관진흥법」제11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,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시간을 정 한다.

제45조(시설 및 도서관자료) 「대학도서관진흥법」제1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,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는 다음에 따른다.

- 1. 도서관 연면적은 재학생 1인당 1.2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되, 다만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교수·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.
- 2. 도서관자료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[별표 2]에 따른다.
- 3. 학생 수 및 자료증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·교육 지원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한다.

제46조(대학도서관 협력망 구축) 다른 대학도서관과 교류·협력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종합목록 구축
- 2. 상호대차 협력
- 3. 디지털 자료의 공동 활용
- 4. 학술자료의 공동 수집 및 보존
- 5.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업무

### 부 칙

- 1.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 [별표 1]

## 도서관 직원의 배치기준

구분	배치인원	산출기준	비고	
기본인력	사서 2명	재학생: 1,000명 미만		
기준한학	사서 3명	재학생수:		
증원인력	사서 1명	학생 1,000명을 초과하는 2,000명당	학부생+대학원 생	
	비사서 1명	사서직 증원수의 50%		

## [별표 2]

## 도서자료 기준

구분	최소 장서수	최소 연간 증가책수	비고
도서 자료	학생 1명당 70권 이상	재학생 1명당 2권	도서자료: 연속간행물을 제외한 인쇄자료로 전자책 포함 기본도서: 등록된 도서자료 총수 연간증가책수: 해당 학년도에 구입한 자료